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47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하영제・박성민・정진석

윤두현 · 정운천 · 이태규

김형동 • 윤창현 • 서일준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때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즉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현행법은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산림 관련 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하여 현재 산림

청 주관으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여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의 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일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립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림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필요성의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하고, 그 날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의2 신설).
- 나. 현행법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용어 중 특정 조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하나의 용어로 정비함(안 제 1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19조).
- 다. 산림기본계획의 마련 및 산림정책의 도출을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산의 날) ① 산림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의 날에 기념 행사 등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보호"를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복구 등"을 "복구 등 산림보호"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통계조사 및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에 필요한 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통계조사 결과와 그 밖의 산림 및 임업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산림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산림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보호"를 "조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용을"을 "자원화를"로, "보호"를 "조성·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산의 날) ① 산림의 합
	리적 보존과 이용에 대한 중요
	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필
	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
	<u>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u>
	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산의 날에 기념 행
	사 등 적합한 사업을 실시할
	<u>수 있다.</u>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
행)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1	행) ①
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림의 보전 및 <u>보호</u> 에 관한	3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5.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u>복구</u> 등에 관한 사항
- 6. ~ 11. (생략)
- ② ~ ⑧ (생 략)

<신 설>

- -----복구 등 산림<u>보호</u>-----
- 6. ~ 11.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2(통계조사 및 산림데이 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 청장은 산림정책의 방향을 정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 로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통계 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통계조사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통계조사 결과 와 그 밖의 산림 및 임업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산림데이터베 이스로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수목원의 <u>보호</u> 및 육성) 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u>이용을</u>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u>보호</u>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흔	三
통계조사 및 제3항에 따른 (<u>난</u>
림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븨
대상ㆍ시기 및 방법과 제3항여	케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u> </u>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
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19조(수목원의 <u>조성·운영</u> 등	킺
육성)	- —
<u></u> 자숙	린
<u>화를</u>	-
<u>조성·운영</u>	· —
	· —
_	